

☎ 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팀원 서형석(6535)/ E-mail: kma_sh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1-06998호

시행일자 2023. 9. 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관련 재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10228(2023.9.1.)

3. 상기근거와 같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(PCR)의 긴급사용승인이 '23년 9월 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해온바, 귀 회의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* 종료는 긴급사용승인되었던 9종 제품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으로, 9월 2일부터는 정식 허가 제품을 사용하여 응급용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 양성 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됨

※ 붙임 :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. 끝.

대한 의 사 협 회 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(각과개원의협의회), 대한병원협의회, 대한전공의협의회, 대한공중보건협의회, 대한병원장협의회, 한국여자의사회장